

의안번호	2219509
의 퇴 인	이주영 의원
회 답 일	2026.7.9.
추계번호	26E3082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우수 야외활동 프로그램 이용비용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적용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59조의4제3항 (특별세액공제)	○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대상 추가 - (현행)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 비속 등을 위하여 지급하는 교육비(미취학아동 및 초등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등)에 대하여 15% 세액공제 적용 (한도 300만원) - (개정안)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에 18세 미만의 아동을 위하여 지급하는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우수야외활동 프로그램의 이용 금액 추가 [참고사항] 개정안은 우수야외활동 프로그램 인증제도 운영 근거 신설 등에 관한 「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이주영의원 대표발의, 의안번호 제2219507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함	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59조의4 제3항(특별세액공제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18세 미만의 아동을 위하여 우수야외활동 프로그램으로 인증받은 야외활동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대해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하려는 것으로, 소득세수의 감소가 예상됨

- 교육비 특별세액공제가 적용될 경우 우수 야외활동 프로그램 이용 비용에 대해 15%의 세액공제가 적용됨
- 개정안에 따른 비용추계를 위해서는 우수 인증을 받은 야외활동 프로그램을 이용한 근로소득자의 인원 및 소득수준, 소득수준별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및 소득세 결정세액 현황, 프로그램 이용요금 지출내역 등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나, 야외활동 프로그램 인증 제도는 현재 운영 중인 제도가 아니므로 현 시점에서 관련 정보의 습득이 불가하여 객관적인 추계에 어려움이 있음
 - 개정안은 우수 야외활동 프로그램 인증 제도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「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이주영의원 대표발의, 의안번호 제 2219507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, 해당 법률안의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개정안의 내용 또한 조정될 수 있음
 - 해당 법률안은 아동·청소년의 신체적·정신적 건강을 증진하고, 아동·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취지임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1과	신홍철	박연서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신홍철	02-6788-4745	hongfe@assembly.go.kr